

법률 서비스 시민총합법률사무소

청원서

의견 자료실		
W3	A 3~6	99

[청원인] 1.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 박승룡, 박무영, 이상경

02) 859-0430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652-2

2. 중국노동자센타

소장 : 오천근

02) 798-6356

서울 용산구 남영동 8-1

3. 이.호 택 (중국활동 실무간사)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외국인노동자 인권상담실장

02) 522-470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 빌딩 3층

[피청원인] 법무부장관

[제목] 중국교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 수사 청원

청원의 취지

최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교포집단거주지역인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 다니면서 한국초청 등의 구실로 엄청난 돈을 사취 잡적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빈발함으로써 중국교포사회가 황폐화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신 및 대내적 법의식이 추락하고 있으므로 조사하시어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

1. 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중국노동자센타를 중심으로 1994년 5월경부터 활동하고 있는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체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은 그동안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에서의 활동을 거쳐 1995. 8. 23. 부터 1995. 10. 13. 까지 중국 동북3성 조선족거주지역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산재를 당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외국인노동자를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요녕신문, 연변일보, 연변라디오, 연변텔레비전 등 현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로 약 150건의 산재사건과 약 100건의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밖에도 한국국민들이 중국교포사회에 저지른 많은 범죄행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교포의 한국입국 열풍을 악용하여 한국국민들이 중국에 가서 한국초청명목으

로 수수료를 사취하거나 횡령한 것이었는 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중국교포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시간적 여유없이 한국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쫓겨난 뒤에는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음을 악용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노임, 위탁금, 대여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이들을 귀국시킨 후 횡령한 사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범죄행위들이 그 자체로서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의일 뿐만 아니라, 벌써 200만 중국교포사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린 중대한 국제상의 문제요, 중국교포사회에서의 양팍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외면적 한국열풍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한국의 위신과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심각한 국익저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교포사회는 역사적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옛 땅에 터잡고 함께 숨쉬어온 같은 겨레일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상황에서 통일에 이르는 가교로서 또 통일후 한민족 응비의 전진기지가 될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생각할 때, 중국교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심정적 친밀감을 복돋우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적대감으로 자라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 한국초청 수수료 사기 내지 횡령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된 외국인노동력의 국내유입요인에 따라 많은 중국교포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10만 가량 존재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중국교포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국내적으로도 중국교포문제가 심각한 것도 물론이지만 200만 중국교포사회 역시 한국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교포들은 대부분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충격이 적고 어느 정도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면 비교적 치명적 피해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교통비 음식값 인건비 등이 대체로 한국의 10분의 1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물가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임금수준 및 화폐 가치는 큰 것이기 때문에 중국교포들은 누구나 한국에 와서 돈벌어 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일부 한국국민들은 이러한 중국교포들의 한국열풍을 이용하여 조선족집단거주지역인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1인당 중국인민폐 3만원 내지 5만원(한국돈 약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입국을 주선하거나 심지어는 초청을 빙자한 사기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국민들이들이 정상적으로 중국교포들을 초청하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란 몇가지 서류에 대한 공증비 1인당 한국돈 10만원(인민폐 1000원)정도가 고작이었을 터인데 1인당 한국돈 약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심지어 한사람이 100명씩 사람을 모은 것은 이들이 거짓으로 법을 어기면서 사람장을 통하여 쉽게 돈을 벌려 했던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중국교포들에게 있어서 인민폐 3만원 내지 5만원이라는 돈은 집과 땅을 포함한 전재산을 팔고 친지들에게 높은 이자로 빚을 얻어야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의 돈이지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6개월정도에 만회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들은 운명을 건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들 브로커들은 처음부터 초청의 의사와 능력도 없이 단순히 수수료 사취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수수료를 쟁기고 잡적하여 버림으로써 엄청난 수자의 중국교포들이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교포들에게 있어서 수수료를 사취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자원 모두를 날리고 더이상 재기할 수 없는 빚더미에 놀려 자살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범죄자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1995년 초부터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방지책으로 55세 이하의 젊은 중국교포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사증발급허가서를 요구함으로써 브로커들이 중국교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브로커들은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 잠적해버리는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3. 위탁금, 대여금, 노임 등의 사취, 횡령

우리는 이미 한국에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국교포들로부터 자신들이 한국에 체류할 당시 한국사람들에게 맡겨둔 돈이나 빌려준 돈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출국조치되었으며 귀국한 뒤에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하여 고로워하고 있다는 호소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교포들이 한국체류 당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체류사실이 알려지면 시간적 여유없이 강제출국 되고 출국된 뒤에는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음을 악용하여 많은 한국사람들이 위탁금, 대여금, 노임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이들이 귀국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귀국하면 곧 보내 주겠다고 속여 이들을 귀국시킨 후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고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심산으로 중국교포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돈을 갚지 않고 이들을 쫓아낸 파렴치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맡겨두었던 돈의 반환을 거절하고 횡령한 것이 횡령죄가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변제 할 의사도 없이 이들이 강제출국될 기회만을 노리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나 노임지급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일을시키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이들의 강제출국을 기화로 연락을 끊고 잠적 도피한 행위등은 단순히 민사상의 대여금, 노임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를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들이 단순히 갚아야 할 돈을 아직 갚고있지 못하다는 정도를 넘어 신분과 국경의 장벽을 악용하여 남의 돈이나 근로를 사취하였음을 명백히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을 방지한다면 한국의 대외적 위신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한 도덕을 봉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첨부서류

1. 고소장 목록	1 부
1. 고소장	53 부
1. 흑통강신문, 연변일보, 요녕신문 사본	각1부

1995년 12월 13일

위 청원인 박승룡

(인)

(우편물을 우편화)
오천근
(인)

이호택

(인)

1. 고소장목록

번호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	고소 사실	피해금액	등기번호
1	강명규 등 6명	김재현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6,000,000 원	195
2	강철준 등 2명	조규택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320,000 원	80
3	고승범 등 11명	김용환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900,000 원	504
4	권선옥	김효종	대여금 및 노임사취횡령	4,500,000 원	349
5	권혁혜 등 59명	주석준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29,500,000 원	413
6	김경철 등 2명	오통88호	선상폭행 등		344-(2)
7	김광만	문채규	위탁금(노임)횡령	1,980,000 원	429-(1)
8	김광수	최원식 등	선상폭행 등		32
9	김길춘 등 10명	원부준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0,000,000 원	45
10	김성모 등 6명	신태호	사이판노무수출명목사기		393
11	김순음 등 3명	윤계영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900,000 원	327
12	김영숙	이형순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00,000 원	221
13	김영종	송영종	위탁금, 노임, 약값 사취횡령	6,002,000 원	122
14	김옥순	이희연	위탁금(계금)사취횡령	5,000,000 원	430-(1)
15	김옥순	유금순	사기예의한 대여, 대여금횡령	10,000,000 원	430-(2)
16	김용순	서경환	약품사취	3,500,000 원	43-(2)
17	김혜숙 등 3명	김만식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500,000 원	104
18	김홍선 등 2명	김문화	노임사취횡령	4,000,000 원	401
19	문덕철	문제량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2,000,000 원	224
20	박경호	김정수 등	미국비자명목수속비사취	4,000,000 원	247
21	박경희	안성수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3,000,000 원	502
22	박봉숙	주영수	창란대금사취횡령	400,000 원	337
23	박영학	송중희	위탁금횡령	17,520,000 원	503
24	박원식	진수용	위탁금횡령	2,800,000 원	19
25	백명옥	이기숙	대여금사취횡령	4,000,000 원	358
26	손정화	전학봉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등	7,950,000 원	317
27	오선녀	유성오	말레이지아노무수출명목사기	8,500,000 원	22
28	원승희	이국성	끌 횡령	660,000 원	225
29	윤봉자	박유경	위탁금횡령	4,000,000 원	353
30	이광주	송기보	대여금사취횡령	400,000 원	421-(4)
31	이광주	이윤희	대여금 등 사취횡령	400,000 원	421-(5)
32	이광주	임춘근	대여금사취횡령	220,000 원	421-(6)
33	이금자 등 2명	소병훈	위탁금횡령	1,200,000 원	500
34	이상태	윤정식	대여금사취횡령	8,000,000 원	427
35	이생글 등 3명	이원제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5,300,000 원	70
36	이재복 등 11명	구연만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9,300,000 원	388
37	이지연	홍성호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840,000 원	336
38	임영호 등 100명	유종열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5,000,000 원	322
39	장용철	김홍갑	여비명목사취횡령	800,000 원	428
40	장인숙	박송원	한국비자명목사기(직업소개소)	9,350,000 원	57
41	정영칙	성낙민	위탁금 및 약값횡령	5,000,000 원	412-(2)
42	조영화 등 2명	이상렬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600,000 원	85
43	주기룡	김삼열	위탁금횡령	11,000,000 원	123
44	지세찬 등 3명	윤길선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6,000,000 원	398
45	최만수	정해성	대여금사취횡령	3,600,000 원	437-(2)
46	최성철	김춘경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500,000 원	152
47	최연옥	이익환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등	800,000 원	193
48	최인건	김옥영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000,000 원	261
49	최재임	정옥순	대여금 및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8,800,000 원	164
50	최청송	김희동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200,000 원	435
51	한태환 등 4명	원유훈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6,000,000 원	228
52	허경남 등 3명	김만수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800,000 원	310
53	황기운 등 5명	이광열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6,900,000 원	294